

제2576호
2018. 04. 2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8-43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 제2018-44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 제2018-45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4
- 제2018-46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5

● 공 고

- 제2018-31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5
- 제2018-314호 :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1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572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16	2018.04.25.	난계로1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99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68	2018.04.25.	다산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호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9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08	2018.04.25.	청구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1.01.27	옛 지역명칭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1-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5-1	2018.04.25.	을지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5.26.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인용한 도로명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36	2018.04.25.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5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567	551145.43	198293.79	450839.56	198222.87	회현동1가 4-9
9568	551145.74	198242.06	450839.86	198171.14	회현동1가 23-4
9569	551116.60	198219.61	450810.73	198148.70	회현동1가 192-1
9570	551094.76	198175.71	450788.88	198104.81	회현동1가 194-69
9571	551085.56	198231.84	450779.70	198160.93	회현동1가 28-2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18년 4월 5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6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4호(2017. 7. 1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4)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대
- 다. 정비구역의 면적 : 2,128.9㎡ (대지 1,363.1㎡, 정비기반시설 765.8㎡)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삼보개발 대표 김학진, 박원희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7길 13, 303호(기종빌딩)
-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4월 18일
-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층)	높이 (m)	용 도
1,363.1	저층 858.58 고층 802.44	저층 62.99 고층 58.87	15,686.31	850.05	지상15/ 지하4	47.90	숙박시설, 근생시설

-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붙임 1 참조.
-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행정청에 무상귀속)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지적	편입 도로	성명	주소	
1	충무로4가 48-1	대	210.90	45.78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2	충무로4가 48-4	도	336.30	253.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충무로4가 48-11	대	21.80	0.65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4	충무로4가 48-12	대	31.70	1.81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5	충무로4가 48-13	대	174.90	4.15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6	충무로4가 49-1	대	16.50	2.33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7	충무로4가 50-1	대	134.50	24.38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8	충무로4가 50-3	도	3.30	3.3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충무로4가 50-4	대	8.30	1.19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10	충무로4가 50-5	대	67.80	1.49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11	충무로4가 51-5	대	14.20	1.51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2	충무로4가 51-6	대	148.20	6.83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13	충무로4가 52	대	173.20	88.61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14	충무로4가 55	대	338.20	81.41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15	충무로4가 69-1	도	81.20	81.2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6	충무로4가 69-2	도	8.30	8.3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7	충무로4가 69-5	도	252.50	158.10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18	예관동 125-4	대	2.90	1.55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9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계(18필지)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765.8			

나)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지적	편입도로	성명	주소	
1	충무로4가 48-4	도	336.30	253.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충무로4가 50-3	도	3.30	3.3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충무로4가 69-1	도	81.20	81.2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충무로4가 69-2	도	8.30	8.3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충무로4가 69-5	도	252.50	158.10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504.11			

사.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주 완료 후

아. 관계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가. 분양 대상자 및 분양 면적

연번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대지및건물			비고
	성명	주소	토지(㎡)	건물(㎡)	용도	
1	김학진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191,2동706호(우수동,극동아파트)	9.8754	113.646 (68.530)	근린생활시설	505호
2	송근주	경기도남양주시도농로34,401동103호(도농동,부영그린타운)	11.3539	130.660 (78.790)	근린생활시설	303호
3	양원식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187,1003동1202호(일산동,후곡마을)	12.2751	130.660 (78.790)	근린생활시설	305호
4	양광식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142,1704동702호(일산동,후곡마을)	11.3179	130.246 (78.540)	근린생활시설	304호
5	양영희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94길21,204동1801호(상계동,상계불암대림아파트)	11.3179	130.245 (78.540)	근린생활시설	507호
6	김영수	전라북도김제시봉남면화봉3길65	10.6867	122.982 (74.160)	근린생활시설	410호
7	황태희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로101,612동201호(자곡동,래미안강남힐즈)	3.5190	40.496 (24.420)	근린생활시설	401호
8	김단유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로101,612동201호(자곡동,래미안강남힐즈)	5.1358	59.103 (35.640)	근린생활시설	402호
9	김보승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로101,612동201호(자곡동,래미안강남힐즈)	5.1358	59.103 (35.640)	근린생활시설	403호
10	김미성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0,702동901호(정자동,정든마을)	8.3393	95.968 (57.870)	근린생활시설	306호
11	윤자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0,702동901호(정자동,정든마을)	5.1358	59.103 (35.640)	근린생활시설	502호
12	윤원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0,702동901호(정자동,정든마을)	5.1358	59.103 (35.640)	근린생활시설	503호
13	윤완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0,702동901호(정자동,정든마을)	8.3393	95.968 (57.870)	근린생활시설	409호

연번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지대지및건물			비고
	성명	주소	토지(㎡)	건물(㎡)	용도	
14	김미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145,110동1603호(재송동,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11.3539	130.660 (78.790)	근린생활시설	406호
15	김도형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145,110동1603호(재송동,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8.3393	95.968 (57.870)	근린생활시설	509호
16	김로경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145,110동1603호(재송동,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9.6535	111.092 (66.990)	근린생활시설	404호
17	김성만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로101,612동201호(자곡동,래미안강남힐즈)	9.8754	113.646 (68.530)	근린생활시설	405호
18	강형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동로78,617동1203호(고잔동,네오빌6단지아파트)	9.6535	111.092 (66.990)	근린생활시설	504호
19	박희경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동로78,617동1203호(고잔동,네오빌6단지아파트)	10.6867	122.982 (74.160)	근린생활시설	510호
20	문동석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242,101동801호(옥수동,동인샤인빌아파트)	7.7672	89.384 (53.900)	근린생활시설	302호
21	박희성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242,101동801호(옥수동,동인샤인빌아파트)	11.3179	130.245 (78.540)	근린생활시설	407호
22	박원희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191,4동1305호(옥수동,극동아파트)	10.6867	122.982 (74.160)	근린생활시설	307호
23	김성호	미합중국07024뉴저지포트리워싱턴애브뉴173번지	11.3539	130.660 (78.790)	근린생활시설	506호
24	김정호	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124번길127,504동906호(만수동,주광아파트)	12.2750	141.260 (85.182)	근린생활시설	408호
25	김영호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16길14-14(서교동)	12.2750	141.260 (85.182)	근린생활시설	508호
26	박경재	충청남도태안군남면천수만로365-51	146.6273	1,350.781 (1,017.510)	근린생활시설	B1층,6층
27	주식회사 충무로개발	경기도파주시조리읍등원로230	3.5190	32.418 (24.420)	근린생활시설	501호

나.보류지시설명세

층호별	구조	용도	토지(㎡)	건물(㎡)	비고
179호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3721	20.848	
705호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21.261	
712호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19.635	
713호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23.255	
720호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620	23.301	
721호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24.695	

※보류지의 처분은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보류지 처분방법에 따라 처리

다. 일반 분양 명세

연번	층호별	구조	용도	토지(㎡)	건물(㎡)	비고
총계				790.7774	7479.608	-
소계				26.9768	255.28	A타입
1	81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3721	31.91	"
2	91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3721	31.91	"
3	101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3721	31.91	"
4	111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3721	31.91	"
5	121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3721	31.91	"
6	131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3721	31.91	"
7	141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3721	31.91	"
8	151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3721	31.91	"
소계				427.728	4045.29	B타입
9	6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	6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	6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2	6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3	6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4	6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5	61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6	7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7	7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8	7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9	7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0	7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1	7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2	71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3	71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4	71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5	71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6	71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7	8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8	8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29	8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30	8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31	8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32	8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33	81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34	81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연번	층호별	구조	용도	토지(㎡)	건물(㎡)	비고
35	81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36	81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37	81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38	81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39	9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0	9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1	9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2	9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3	9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4	9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5	91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6	91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7	91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8	91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49	91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0	91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1	10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2	10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3	10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4	10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5	10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6	10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7	101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8	101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59	101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0	101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1	101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2	101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3	11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4	11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5	11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6	11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7	11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8	11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69	111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70	111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71	111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72	111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73	111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연번	층호별	구조	용도	토지(m ²)	건물(m ²)	비고
74	111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75	12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76	12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77	12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78	12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79	12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0	12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1	121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2	121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3	121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4	121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5	121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6	121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7	13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8	13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89	13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0	13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1	13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2	13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3	131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4	131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5	131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6	131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7	131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8	131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99	14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0	14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1	14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2	14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3	14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4	14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5	141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6	141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7	141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8	141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09	141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0	141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1	150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2	150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연번	층호별	구조	용도	토지(㎡)	건물(㎡)	비고
113	150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4	1509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5	151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6	151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7	151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8	151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19	151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20	1516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21	1517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122	1518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520	35.485	"
소계				28.5984	270.657	C타입
123	61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30.073	"
124	81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30.073	"
125	91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30.073	"
126	101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30.073	"
127	111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30.073	"
128	121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30.073	"
129	131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30.073	"
130	141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30.073	"
131	151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1776	30.073	"
소계				134.1054	1269.021	D타입
132	6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33	6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34	6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35	60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36	7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37	7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38	7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39	8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0	8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1	8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2	80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3	9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4	9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5	9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6	90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7	10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8	10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49	10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연번	층호별	구조	용도	토지(㎡)	건물(㎡)	비고
150	100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51	11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52	11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53	11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54	110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55	12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56	12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57	12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58	120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59	13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0	13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1	13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2	130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3	14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4	14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5	14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6	140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7	150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8	150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69	15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170	1505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4386	32.539	"
소계				143.2728	1354.68	☞타입
171	6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72	7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73	72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74	72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75	8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76	82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77	82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78	82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79	9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80	92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81	92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82	92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83	10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84	102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85	102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86	102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87	11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연번	층호별	구조	용도	토지(㎡)	건물(㎡)	비고
188	112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89	112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0	112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1	12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2	122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3	122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4	122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5	13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6	132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7	132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8	132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199	14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200	142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201	142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202	142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203	150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204	1521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205	1522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206	1523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9798	37.63	"
소계				30.096	284.68	F타입
207	82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620	35.585	"
208	92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620	35.585	"
209	102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620	35.585	"
210	112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620	35.585	"
211	122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620	35.585	"
212	132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620	35.585	"
213	142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620	35.585	"
214	1520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3.7620	35.585	"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31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며, 조례·규칙 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共有)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 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복지, 환경, 일자리 등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방법을 통해 사회적 수요들을 충족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 공유촉진
- ▣ 공유촉진정책(안 제6조) :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 지원
- ▣ 보조금 등 지원(안 제8조)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보조금 지원 및 제도개선
- ▣ 중구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안 제8조) :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공로 17, 전화 : 3396-4574, FAX : 3396-8616, axlrose40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자치행정과(☎3396-4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 조례 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기업의 지정)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중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3.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이나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18-314호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구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8. 4.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시설 현황

- 시설명칭 : 중구 여성플라자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다산로32길 5 (신당동 292-60외 1)
- 규모 : 지상3층 ~ 지상6층(대지 608㎡, 건물연면적 2,178㎡ 중 1,014㎡)
- 위탁시설 : 여성플라자 지상3층 ~ 지상6층
(※ 지하1층 ~ 지상2층과 지상3층의 일부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

2. 위탁내용 :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4. 위탁조건

- 관장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 시설운영 중 여성플라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음.
- 수탁자는 중구여성플라자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5. 신청자격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여성의 복지, 직업 및 사회·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할 것

관장 내정자 자격기준

▶ 중구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사업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다만,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6. 신청 제외 대상 (결격사유)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7.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04. 23. (월) ~ 2018. 05. 04. (금)**
- 접수기간 : **2018. 05. 02. (수) ~ 2018. 05. 04. (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본관 1층)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수~금, 09:00~18:00)
(※토요일·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8. 제출서류 : 원본 포함 17부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여성플라자 위탁 신청서 ■ 대표자의 경력사항 ■ 중구여성플라자 관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중구여성플라자 관장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법인·단체 등의 여성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 향후 3년간 중구여성플라자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신청서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부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7부 (원본 1부, 사본 16부), 요약서 (17부, 3~5페이지 분량)
 - ※ 꼭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원본에만 첨부
-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 쪽 표시, 목차 라벨 표시, 반드시 제본

9. 수탁법인(단체)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 중구여성플라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모집
- 신청법인(단체)은 심사당일(별도통보)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결과발표 : 개별 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법인·단체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관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7분 내외 운영계획 발표 및 관장의 전문성 등 종합평가 면접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에 게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 (☎3396-5403)로 문의